

투자설명서

2024년 08월 21일

신영증권주식회사

신영증권 플랜업 제383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보통위험)

20,000,000,000 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24년 08월 21일

2. 모집가액 : 20,000,000,000 원

3. 청약기간 : 2024년 08월 23일 (13:00까지)

4. 납입기일 : 2024년 08월 23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신영증권 본지점.
본점 고객지원센터(☎1588-8588)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에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증권 주식회사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

※ ELS· DLS· ELB· DLB에 대한 상품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dis.kofia.or.kr)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1. 투자판단시 **일괄신고서, 일괄신고추가서류 및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닌 점**을 숙지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3.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 수익을 받지 못하거나** 상품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이므로 **관련 투자 위험요소**를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4. 기초자산의 가격에 연계하여 증권의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투자결정시 **기초자산의 성격 및 과거 가격 추이, 기초자산 관련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권리변경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산이 신용위험인 경우 신용사건 발생여부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숙지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5. 발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신용위험이 있으므로 **발행인의 재무현황 및 신용등급(신영증권, 발행사 신용등급 AA-, 2024년 05월 13일 한국신용평가, 2024년 05월 13일 NICE신용평가)** 등을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6. 투자금은 법적으로 **별도 예치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7. 동 파생결합사채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만기 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인에게 중도상환 요청 시 상환비용이 크게 발생**하여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원금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절차 및 상환가격 결정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파생결합사채의 경우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원금상환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원금상환여부는 **발행사(신영증권)의 지급능력**에 따라 여부가 **결정됨**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9. **(자료열람요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 제공

10. **(민원 등 처리방법)** 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88-8588)또는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 일괄신고추가서류,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일괄신고추가서류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 금융투자 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 기준

투자자구분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상품 위험등급 구분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파생결합증권	KRW(원화) 표시통화 ELS, DLS, ELW, ETN	원금비보장 (기타해외 기초자산) ELW / ETN	원금비보장 (국내 및 해외선진국 기초자산) 등급상향기준에 따라 등급상향	원금부분보장 (80%이상보장) 등급상향기준에 따라 등급상향			
	외화표시통화 ELS, DLS, ELW, ETN	외화표시통화 원금비보장	외화표시통화 원금부분보장 (80%이상보장) 등급상향기준에 따라 등급상향				
파생결합사채	KRW(원화) 표시통화 ELB, DLB				ELB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DLB (기타파생결합사채)		
	외화표시통화 ELB, DLB			ELB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DLB			



1) 외국통화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품의 경우 1등급 상향하며 유동성 위험, 신용 위험 등을 고려하여 위험등급 상향 가능

2) 등급상향기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개 등급 상향

- 기초자산의 개수 : 기초자산의 수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기초자산의 종류 : 특수한 형태의 기초자산과 연계되어 상품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능성이 낮은 경우(예 : 전략지수 등)
- 기초자산의 가격의 변동성 : 등급산정일 과거 10년간 기초자산의 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일정수준(25%)을 초과하는 경우
- 원금손실조건 : 낙인형 상품의 KI배리어가 일정수준(60%) 이상인 경우, 노낙인형 상품의 만기배리어가 일정수준(70%) 이상인 경우 (파생결합사채 및 원금 80% 이상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은 적용하지 아니함)
- 레버리지 여부 : 손실발생구간의 손실배수가 기초자산의 변동률의 1배를 초과하는 경우

3) 발행사 신용등급이 당사 (AA-/Stable, 2024.05.13, 한국신용평가 및 NICE신용평가) 이상인 경우 해당이며 당사 신용등급 미만의 발행사가 발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위험등급을 부여 받아야 함

※ 고객성향별 특징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의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합니다. 투자자금의 상당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위험중립형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 손실위험 감수할 수 있습니다.
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의향이 있습니다.
안정형	- 예금 또는 적금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 본 문 】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종목명 : 신영증권 플랜업 제383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보통위험)]

본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1) 용어의 정의

항 목	내 용
1) 거래소	각 기초자산과 관련된 아래 각 거래소 - 삼성전자 보통주 :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2) 관련 거래소	삼성전자 보통주에 관해서는 한국거래소 또는 그 승계기관
3) 예정거래일	기초자산 모두의 예정거래일. 삼성전자 보통주의 예정거래일은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정규거래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개장하기로 예정된 날
4) 교란일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개장하지 못하거나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한 날
	(ㄱ) 거래 장애(Trading Disruption):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거나(상·하한가로 인한 경우를 포함),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의 거래가 중단 또는 중지되는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ㄴ) 거래소 장애(Exchange Disruption):

항 목	내 용
5) 시장교란사유	<p>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 직전 1시간 동안에 시장참여자들이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에는 지수의 20% 이상을 구성하는 증권)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 또는 관련 거래소에서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 또는 옵션 등을 거래하거나 그 시장가격을 얻는 것이 제한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로서 발행인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p> <p>(ㄷ) 조기 폐장(Early Closure):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거래소영업일에 정규거래시간의 실제 폐장시간과 정규거래시간 종료시 거래 체결을 위한 호가제출마감시간 중 먼저 도래하는 시간의 1시간 이전까지 폐장시간을 공표하지 아니한 채 예정폐장시간 이전에 폐장한 경우</p> <p>(ㄹ) 그 밖에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조건을 변경 및 결정하는 것이 요청되는 상관례상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 또는 존재하는 경우</p>
6) 거래소영업일	<p>삼성전자 보통주의 거래소 영업일은 예정거래일 중 거래소 또는 관련거래소가 모두 개장하는 날을 말합니다. (단, 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자산 모두에 관련된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개장하는 날을 거래소영업일로 합니다.)</p>
7) 영업일	<p>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의 시중 은행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날</p>
8) 기초자산	<p>본 증권의 상환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대상자산</p>
9) 투자기간	<p>최초기준가격평가일의 익일부터 만기평가일(만기평가일 포함)까지의 기간</p>
10) 계산대리인	<p>발행인인 신영증권 주식회사</p>
11) 종가	<p>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정규거래시간 종료시간에 발표하는 기초자산의 최종가격</p>
12) 예정폐장시간	<p>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가 예정거래일에 해당 거래소 또는 관련 거래소의 정규거래시간을 종료하기로 예정한 시간</p>
13) 평가일	<p>최초기준가격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p>
14) 상환일	<p>자동조기상환, 중도상환, 조기종결 또는 만기상환시에 발행인이 상환금액을 지급하기로 규정된 날</p>

(2) 모집 또는 매출의 개요

항 목		내 용
증권의 종류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종 목 명		신영증권 플랜업 제383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보통 위험)
기초자산의 종류		삼성전자 보통주
모집(매출) 총액		20,000,000,000원
1증권당 액면금액		10,000원
1증권당 발행가액		10,000원
발행수량		2,000,000
청약기간	청약시작일	2024년 08월 23일
	청약종료일	2024년 08월 23일 (1영업일 청약)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합니다.
납 입 일		2024년 08월 23일
배정 및 환불일		2024년 08월 23일
발 행 일		2024년 08월 23일
만 기 일		2025년 08월 22일
예 탁 기 관		한국예탁결제원
상장여부		본 증권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만기상환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 권리의 관리내용 2. 권리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기시 결제방법		현금결제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본 증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는 고난도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시 원금 이상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변동 이외의 요인(투자자 요청에 따른 중도상환, 발행인의 지급 불이행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행취소에 관한 사항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금액은 환불일에 투자자들의 해당 청약 계좌로 반환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고, 실물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전자등록기관의 계좌관리기관등 자기 계좌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고객계좌부예의 전자등록을 통하여 본 증권을 보유합니다. 자동조기상환일, 중도상환금액지급일, 쿠폰지급일, 만기일 등 각종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顺延되며, 이에 대한 추가이자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예상손익구조

본 증권의 예상손익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1)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 시장상황의 변동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헤지거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본 증권의 총 청약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은 본 증권의 모집 및 발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청약증거금으로 납입된 금액은 취소 결정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자의 청약계좌로 반환되며, 반환되는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본 증권의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 청약금액만을 납입하며,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금액에 따라 안분배정하며 단수는 발행인의 재량으로 배정합니다.

3) 본 증권은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이 원칙이나 투자자가 원할 경우 "본문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2. 권리의 내용 (5)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에 따라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4) 본 증권의 중도상환금액, 자동조기상환금액, 만기상환금액, 쿠폰지급금액 등의 결정을 위하여 지정된 기준가격평가일 등 평가기준일(이하 "평가일"이라 함)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관해서라도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모든 기초자산에 관하여 평가일이 아닌 그 다음 거래소영업일을 해당 평가일로 합니다.

5) 본 증권의 중도상환금액, 자동조기상환금액, 만기상환금액, 쿠폰지급금액 등의 결정을 위하여 지정된 기준가격평가일 등 평가기준일(이하 "평가일"이라 함)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관해서라도 교란일인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모든 기초자산에 관하여 교란일 또는 평가일이 아닌 거래소영업일을 해당 평가일로 하며, 만일 8 거래소영업일 동안 계속하여 교란일인 경우에는 그 8번째 거래소영업일을 해당 평가일로 하여 발행인이 상관례에 따라 선의로 평가가격을 결정합니다.

6) 본 증권의 평가일이 위 내용에 따라 연기되는 경우 해당 평가일과 관련한 지급일은 그에 따라 연기됩니다.

7) 본 증권의 중도상환금액, 자동조기상환금액, 만기상환금액, 쿠폰지급금액 등의 지

급을 위하여 지정된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해당 지급일로 합니다.

8) 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 은행계정 대기업 원화대출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지급합니다. 단,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공모방법

본 증권은 일반 공모의 방식으로 모집 예정이며, 퇴직연금사업자의 위탁계좌로 청약을 제한합니다. (발행사의 확인 결과 청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청약자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1) 본 증권의 1증권당 발행가액은 10,000원이며, 공모가액은 (1증권당 액면금액 x 증권의 수량)입니다.

(2) 본 증권의 1증권당 이론가격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기준 10,044.25원으로 추산됩니다.

당사는 본 유가증권의 발행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옵션의 가격을 도출할 때 사용하는 블랙-숄즈(Black Scholes)의 모형을 사용하였습니다. 블랙-숄즈의 모형은 주가가 평균적으로 무위험 이자율과 배당율의 차이만큼 상승하여 이를 중심으로 불규칙하게 변동한다고 가정하여 만든 모형입니다. 본 증권의 이론가격은 블랙-숄즈 모형을 사용하여 결정된 본 증권의 현금흐름을 무위험이자율을 사용하여 현재 할인한 금액의 기대값입니다.

발행가액과 이론가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블랙-숄즈 모형에서 사용되는 매개변수(parameter) 의 값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발행가액 결정시 사용하는 변동성 및 상관계수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시점에서 예측한 발행일 이후의 변동성 및 상관계수에 기반합니다. 이에 반해 이론가격 결정시 사용되는 값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이전 일정기간의 실현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발행가액 산정시 블랙-숄즈 모형의 변형된 모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숄즈 모형은 기초자산 가격 수준 및 발행 후 경과시점에 상관 없이 일정한 변동성을 가정하나 발행가액 산정시 사용하는 변형된 모형에서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블랙-숄즈 모형에서는 기초자산 가격 수준에 상관 없이 일정한 상관계수(linear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사용하나 변형된 모형에서는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발행가액 산정시에는 거래세 및 기초자산 매수/매도 호가 차이 등의 헤지비용 및 발행사의 수익을 포함합니다.

본 증권의 이론가격은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전일 현재 과거 데이터 및 시장변수를 근거로 하여 발행인이 내부적으로 산정한 이론상의 평가금액을 의미하며, 이론가격 산출에 사용한 시장변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기초자산가격 변동성	6개월 이동평균 변동성 (연환산) - 삼성전자 보통주 : 29.56%
기초자산 연 배당률	기초자산에 대해 블룸버그 화면에 표시된 1년간의 배당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배당률(연속복리기준) - 삼성전자 보통주 : 1.87%
무위험이자율	6개월 만기 국고채 수익률 - 한국 국고채 수익률 : 3.123%

발행 이후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정가액**은 가격 결정 모형, 사용하는 매개변수의 차이 및 시장상황 변동 등에 따라 본 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일 현재 제

시한 이론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및 매출관련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항 목	내 용
증권 발행의 공고	청약 종료일에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본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의 공고	청약 종료일에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본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안내의 공고	청약 시작일에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본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결과 배정의 공 고	청약 종료일에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본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의 방법

항목	내용
청약의 방식 및 절차	<p>(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p> <p>(2) 청약기간 중 영업개시시간 이후부터 영업종료시간까지 청약을 접수합니다.</p> <p>(3)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약자예수금에서 인출하여 해당 계좌에 정상잔고로 입금처리 됩니다.</p> <p>(4) 동일인이 복수의 계좌에서 이중으로 청약하는 것은 가능하나, 동일인이 동일한 계좌에서 추가 청약하는 경우에는 청약 취소 후 재청약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p> <p>(5)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통하여 적정한 대리여부를 확인한 후 청약합니다.</p>
	2024년 08월 23일(1영업일 청약)

항목	내용
청약기간	(청약기간 이후 청약취소 불가)
청약 단위	최소 청약금액 100만원으로 하며 청약단위는 1만원으로 합니다.
청약한도	200억원
청약 증거금	청약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청약증거금은 본 증권 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납입금을 초과하는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합니다.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약 취급처	신영증권(주) 본,지점
배정일 및 환불일	2024년 08월 23일
납 입 일	2024년 08월 23일
청약시 유의사항	<p>1) 현금청약, 대체청약, 자금과 대체청약 가능합니다.</p> <p>2) 청약취소는 청약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청약취소시 청약자예수금에서 인출하여 해당 계좌에 정상잔고로 입금처리 됩니다.</p> <p>3)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발행을 위한 신규청약만 허용되며, 발행 이후 운용기간 중 추가청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p> <p>4) 청약기간 중 동일인이 동일계좌로 추가 청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청약을 취소 후 재청약 하셔야 합니다.</p> <p>5) 청약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청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유효한 청약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p> <p>6) 발행한도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의 발행가능금액을 말하며 [발행가액 × 발행수량]입니다.</p> <p>7) 청약금액은 [발행가액 × 청약수량]입니다.</p> <p>8) 청약금액의 합계가 5억원 미만일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p>

(3) 증권의 발행 및 교부등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09조 제5항에 의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등록발행하여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일괄예탁하는 방식으로 발행되며, 본 증권의 실물은 발행되지 아니합니다.

본 증권의 보유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의 예탁과 예탁자 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의 권리 기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본 증권을 보유하게 되고, 증권 실물의 발행 또는 권리필증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가. 본 증권의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은 발행인인 신영증권 주식회사가 계산대리인(Calculation Agent)으로서 거래소 또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발표하는 기초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의 지급사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였습니다.

○ 지급금액 및 상환금액 지급대행기관:

우리은행 여의도중앙지점 여의도중앙업무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우리은행은 발행인의 지시에 따라 상환금액의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것일 뿐, 상환금액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 손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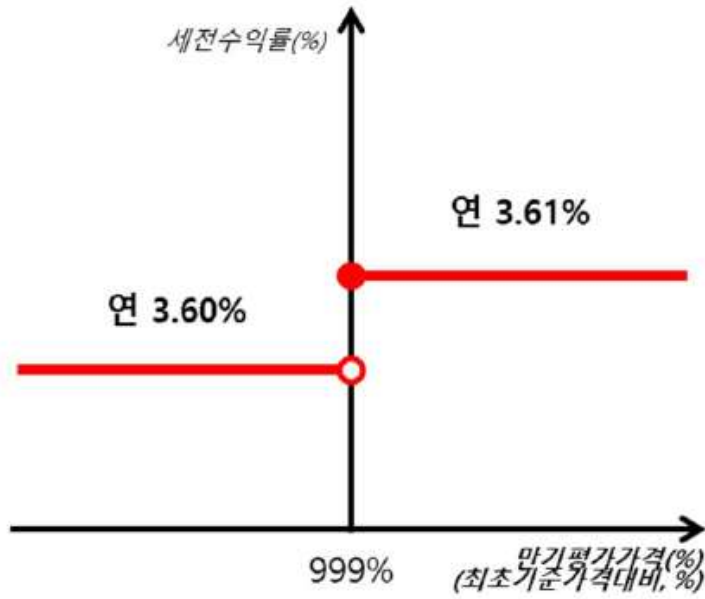
(1) 상황별 손익구조

구분	내용	투자수익률(세전)
만기 상환	①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99% 이상인 경우	연 3.610%
	②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99% 미만인 경우	연 3.600%

(2)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본 증권 보유자의 손익구조는 만기평가일의 삼성전자 보통주의 가격 변동(증권의 구조에 따라서는 평가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포함)에 따라 지급액이 구분됩니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예상 손익구조는 다음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신영증권 플랜업 제383회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3) 손익구조 예시

1)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매입 액면금액은 최저청약금액인 100만원, 기초자산의 최초기준가격은 삼성전자 보통주 70,000.00으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할 때, 수익확정을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조 건	삼성전자 보통주
만기상환 조건	최초기준가격의 999%	699,300.00

2) 만기상환에 따른 상환금액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 조건의 예	상환금액(세전)
① 만기상환 조건1 충족	액면금액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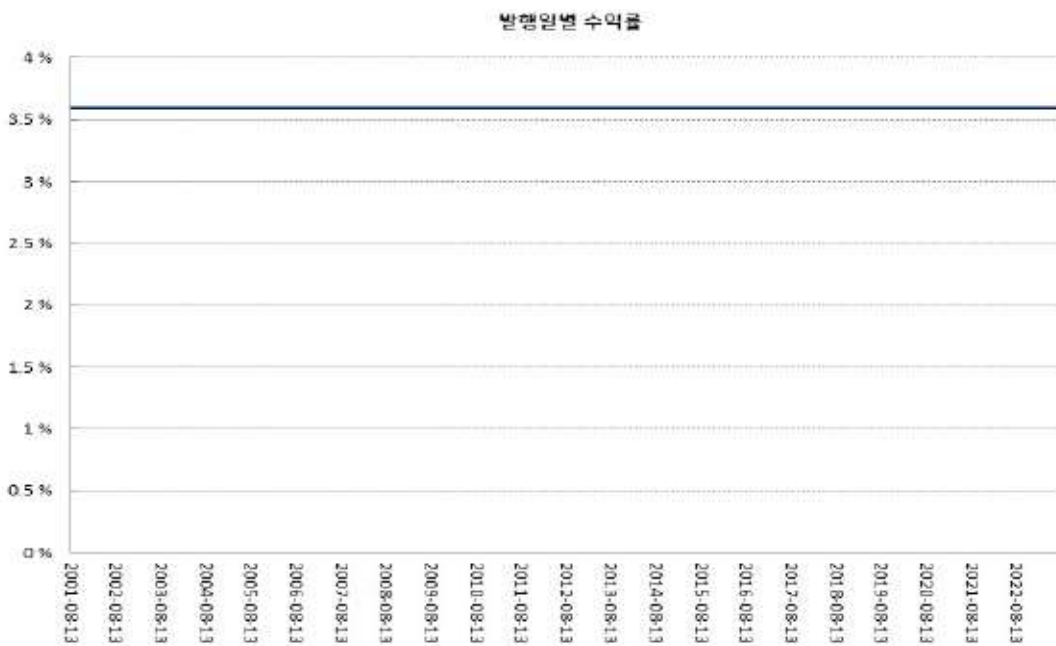
지급 조건의 예	상환금액(세전)
만기평가일에 만기평가가격이 삼성전자 보통주 699,300.00인 경우	+ (3.610%× n/365) = 1,036,001 원
② 만기상환 조건2 충족 만기평가일에 만기평가가격이 삼성전자 보통주 692,300.00인 경우	액면금액 × {100% + (3.600%× n/365)} = 1,035,901 원

* n=364일 [발행일(불포함)로부터 만기일(포함)까지의 달력일수]

* 상환금액은 원미만 절사 하여 지급.

(4) 기초자산의 과거자료를 이용한 수익률 모의실험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과거 가격변동치를 이용한 손익구조 및 통계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아래의 자료는 과거의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아래의 자료가 본 증권 투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의실험그림>

상환구분	수익률	발생횟수	발생빈도
만기상환1	연 3.61%	0	0.000%
만기상환2	연 3.60%	5,436	100.000%

상환구분	수익률	발생횟수	발생빈도
진행중		0	0.000%
Total		5,436	100.000%

<모의실험표>

주1) 위 그래프와 표는 투자시점이 2001년 08월 13일부터 2024년 08월 12일인 경우로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입니다.

주2) 분석시작일(2001년 08월 13일)로부터 분석기간동안 매 거래소영업일에 동일한 상품이 신규발행되어 투자자가 이를 반복해서 매입하는 것을 가정하였으며 이 경우 각각의 만기수익률을 표본으로 추출하였습니다. (총 5,436회)

주3) 자동조기상환금액의 채투자는 가정하지 않았으며,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조기상환시의 수익률을 만기수익률로 인식하였습니다.

주4) 위 그래프와 표는 과거 기초자산의 증가를 이용한 손익구조 예시에 불과하며, 본 증권의 투자에 따른 미래의 만기상환수익률의 예측치가 아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최소이익액 및 최대이익액

구 분	내 용	금 액(세전)
최소이익액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99% 미만인 경우 발행사는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액면가액의 (100% + 3.600% × (364/365))를 지급합니다.(세전기준)	액면금액 × 연 3.60%
최대이익액	-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99% 이상인 경우 발행사는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액면가액의 (100% + 3.610% × (364/365))를 지급합니다.(세전기준)	액면금액 × 연 3.61%

2. 권리의 내용

(1) 상환금액의 지급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정하여진 산식에 따라 계산된 상환금액을 해당 지급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기초자산 증가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24년 08월 23일

나. 만기상환

○ 발행인은 만기일에 아래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에 따라 결정된 상환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본 증권을 상환함.

만기상환금액 결정조건	상환금액(세전)
①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9% 이상인 경우	액면금액 × [100% + {3.610% × (n/365)}]
②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9% 미만인 경우	액면금액 × [100% + {3.600% × (n/365)}]

* n=364일 [발행일(불포함)로부터 만기일(포함)까지의 달력일수]

- 만기상환평가가격 : 만기상환평가일 기초자산 증가
- 만기상환평가일 : 2025년 02월 21일
- 만기상환일 : 2025년 08월 22일
(만기일 결정 방식 : 만기상환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

다. 기타 중요사항

○ 평가일이 예정거래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예정거래일을 평가일로 합니다. 기초자산이 복수인 경우, 어느 평가일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예정거래일이 아니면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예정거래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 (단, 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 기초자산 모두에 관련된 거래소 및 관련거래소가 개장하는 거래소영업일을 평가일로 합니다.)

○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해당 평가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포함) 후 2영업일로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후 2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 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익 영업일이 상환일이 됩니다. 또한, 평가일과 상환일 사이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원상환업무 절차가 진행되는 1영업일이 없는 경우 상환일은 익 영업일로 조정됩니다.

○ 투자자의 권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문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의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금액 계산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 발행인은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거나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

(2) 통지방법 및 절차

가. 발행인은 자동조기상환 평가가격 또는 만기평가가격의 결정 후 지체없이 상환금액을산정하여 발행인의 본·지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나. 만기상환 전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발행인의 홈페이지에 매일 게시할 예정입니다.

다. 본 증권의 공정가액(기준가)은 제3의 독립된 평가기관으로부터 수신한(또는 발행자가 직접 산정한) 본 증권의 평가가격이며, 복수의 평가기관으로부터 공정가액(기준가)을 수신한 경우 이들의 평균가격입니다. 당일 종가가 반영된 공정가액(기준가)은 당일 기초자산의 종가가 결정된 이후 익일 오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기준가)은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게시되며, 본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일일단위로 계좌잔고에 기장되는 금액입니다.

(3) 결제방법 및 절차

본 증권은 현금결제 방식으로 상환됩니다. 만기시 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나 권리행사 없이 자동으로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지급일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4)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1)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집합투자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이므로, 집합투자증권과 같은 환매(일종의 중도상환청구권)의 절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본 증권의 투자자는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발행인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대한 위험회피(Hedge)거래

의 상황, 기초자산의 가격, 시중금리,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성, 기초자산의 배당률, 관련 선물 옵션의 가격,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등 가격결정 요인들을 고려하여 공정가액(기준가)의 95% 이상(단, 발행후 6개월까지는 90% 이상) 가격으로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단, 발행인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주식시장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중도상환에 응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에 응하는 경우에도 상환금액 결정방식은 아래 표의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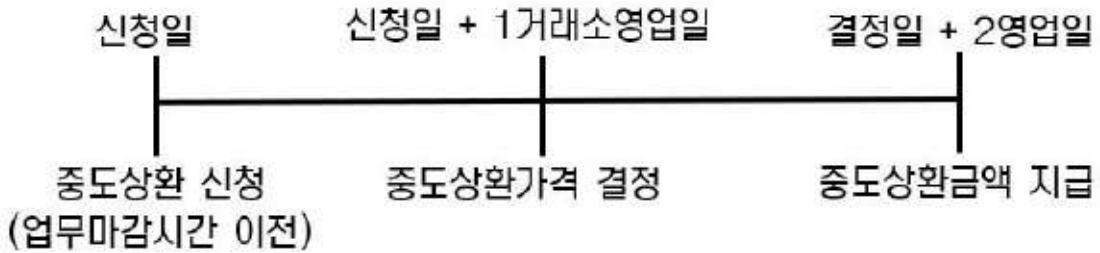
※ 추가연계증권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항 목	내 용
투자자의 중도상환 신청 및 승인	중도상환 신청은 중도상환 신청가능일의 업무마감시간 이전에 유선으로 신청되거나 발행인의 신청양식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신청되어야 하며, 유선 신청시에는 투자자의 신청내역이 발행인에 의해 녹취되며, 중도상환 신청 당일 업무 마감 이후에는 중도상환 신청 취소는 불가합니다.
중도상환 신청 가능일	발행일의 익일부터 매 영업일. 단, 각 자동조기상환평가일(불포함) 또는 만기평가일(불포함) 이전 4 거래소영업일에 해당되는 날(포함)부터 각 자동조기상환평가일(포함) 또는 만기평가일(포함)까지는 중도상환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도상환 신청 최소수량 및 신청단위	최소청약수량과 동일하며, 그 이상은 청약단위로 신청가능합니다. 단,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수량이 최소청약수량보다 작으면 보유수량을 중도상환신청 최소수량으로 합니다.
중도상환가격결정일	중도상환 신청일의 다음 거래소영업일. 기초자산이 둘 이상인 경우, 중도상환가격결정일은 중도상환 신청일 직후의 모든 기초자산의 거래소영업일로 합니다. 단,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가격 결정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항 목	내 용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중도상환가격결정일(불포함)로부터 2 영업일
중도상환가격	<p>중도상환시 중도상환 신청일이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 1년 미만인 경우 연 3.600%에서 연 1.00%를 차감한 금리를 기준으로, 액면금액과 발행일부터 중도상환 신청일까지 일할 계산한 수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사유 등의 특별중도해지의 경우 중도환매금액은 액면금액과 함께 연 3.600%를 기준으로 경과일수로 계산된 수익금액을 지급합니다.</p> <p>*특별중도해지 사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퇴직, 연금지급 등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경우 3. 퇴직연금 제도전환 4. 수수료 지급을 위한 경우 5. 퇴직연금 가입 법인의 합병/영업양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제도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6. 퇴직연금 가입법인의 파산 및 폐업으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7.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8. 퇴직연금 사업자의 사임 및 계약위반의 경우
중도상환가격의 결정에 대한 투자자 유의 사항	<p>중도상환금액은 본 거래의 위험회피(Hedge) 등을 위하여 체결한 거래의 청산비용 및 중도상환가격평가일의 기초자산 가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중도상환요청일, 중도상환금액 평가일 및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등에 공시된 공정가액과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투자자의 중도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 요청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발행인은 중도상환금액 지급의무 외에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중도상환금액 평가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또한 연기될 수 있습니다.</p>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 발생 시 투자자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처	<p>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하여 위 절차에 따라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중도상환금액 지급일 전에 Ⅱ.3.가.에 기재된 본 증권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거나 조기상환일이 지정되었거나 또는 Ⅱ.3.다.의 권리내용의 변경에 따른 증권의 조기상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도상환</p>

항 목	내 용
리 조정	요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고 아래 Ⅱ.3.가., Ⅱ.3.나. 및 Ⅱ.3.다.에 따라 본 증권을 조기상환 처리합니다.

※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발행인별 공정가액(기준가)대비 중도상환가격 비율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절차>

(5) 증권의 발행 취소 및 환불

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 시장상황의 변동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해지거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본 증권의 총 청약금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은 본 증권의 모집 및 발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청약증거금으로 납입된 금액은 취소 결정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자의 청약계좌로 반환되며, 반환되는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증권의 상장 및 매매

본 증권은 상장되지 않습니다.

(7)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1) 본 증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본 증권의 본질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금리수준, 기초자산의 가격수준, 만기까지의 잔존기간, 기초자산의 변동성, 발행인의 재무상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거래되는 실제 거래가격은 본 증권의 본질가치 뿐 만아니라 시장상황, 시장수급 및 세제 등 기타 가격결정요인들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2) 본 증권의 매매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의 보유자는 매매를 통하여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현금화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을 예정이므로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며 본 증권은 파생상품의 성격을 포함한 신종증권이므로 일반적인장외에서의 거래 또한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만기이전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발행인은 본 증권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의 청구에 따라 본 증권을 중도상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절차는 '(4)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부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의 기간 중 발행인에 의하여 (1) 만기일 이전에 조기 상환되거나 (2) 그 권리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

가. 조기종결 사유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발행인은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발행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를 포함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또는 발행인 이외의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인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발행인에게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는 경우

- 발행인에게 어음교환소 또는 거래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

- 발행인이 예금자보호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 발행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발행인이 더 이상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2)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본 증권의 만기일 이전 '나. 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본 증권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상환의무의 발생 사실, 조기종결기준일 및 조기종결금액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 본 증권의 기초자산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의 상장폐지가 발생하여 기초자산의 매매불가능으로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 기초자산이 주식인 경우 기초자산 발행사의 영업양도, 합병, 부도,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거래소의 영구폐지가 결정되거나 거래소가 [10]예정거래일 이상을 연속하여 개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소에서 기초자산 가격의 계산 및 공시를 폐지하기로 발표하는 경우

-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본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금융시장(외환시장 포함)에서의 거래중지사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본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 감독기관의 지도·명령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발행 또는 위험회피(Hedge)거래를 유지할 수 없다고 발행인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또는 본 증권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중대하게 비용(추가적인 조세의 부담이나 공제세액의 감소, 기타 부정적인 조세효과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이 증가하는 경우

나. 조기종결 방법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지급)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종결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조기종결기준일"은 위 가. 1)의 경우 각 호의 사유 발생일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는 다음 거래소영업일)을 의미하며, 위 가. 2)의 경우에는 통지일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서 발행인이 조기종결기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2)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상환하는 경우 발행인은 조기종결기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종결금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초자산의 가격은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또는 관련 거래소 및 장외시장)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며, 조기종결금액은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 해당 증권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자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 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종결금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만기 시 지급수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자산의 거래정지사유로 인하여 본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종결금액의 지급이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에서 유예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2) 권리내용의 변경

본 증권은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은 본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지체없이 발행인은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그 내용을 게재하고 HTS인 eplanup 해당화면에 반영하기로 합니다

o 단, 이러한 사유의 발생이 위 '(1) 가. 조기종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발행인은 위 '(1) 본 증권의 조기종결 및 상환'에 정한 바에 따라 본 증권을 만기 전 조기 상환하여야 하거나 조기상환 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내용 변경사유

1) 지수 산정의 오류 등:

거래소 또는 기초지수 산출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지급된 경우 발행인은 추후 정정발표 또는 확인된 정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단, 그 기초자산 가격의 정정이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정정된 경우에 한하며 발행인은 별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정산의무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시장교란사유[(Market Disruption)]:

어느 평가일이 교란일인 경우 교란일이 아닌 최초의 익 예정거래일로 해당 평가일이 변경됩니다.

o 단, 그 다음 8예정거래일이 모두 교란일인 경우 8번째 예정거래일이 교란일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발행인이 8번째 예정거래일의 기초자산 가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산정하며,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발행인은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에 사용된 기초자산 산출 공식과 방법에 따라 8번째 예정거래일의 각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의 매매가격 또는 호가를 사용하여 기초자산 가격을 산출합니다.

o 복수의 기초자산이 각각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해당 지수의 구성종목이 거래되는 거래소 기준) 어느 평가일이 어느 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면 모든 기초자산에 대하여 교란일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o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어느 한 평가일이 연기되면 그에 연속해서 이어지는 이후 평가일들도 순차적으로 익 예정거래일들로 순연됩니다.
- o 시장교란사유의 발생에 따라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불포함) 후 2거래소영업일로 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후 2거래소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3) 기초자산 거래 장애 등[(Hedging Disruption)]:

본 증권의 발행인은 본 증권의 상환금액 지급과 관련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제3자(비거주자를 포함)와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위험회피(Hedge)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거래소·청산소 또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이행지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외환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중대한 장애(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과 관련한 위험회피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만기일, 지급일 및 만기상환금액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 한 것으로 발행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단, 향후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증권을 상장하게 되는 경우 권리의 변경에 대하여 본 증권이 상장된 해당 거래소의 조치는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서 정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의 계산 발표는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소관이며, 기초자산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의 변경, 기초자산의 계산 및 발표의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산 산출기관의 정함에 따릅니다.

2) 지수 변경[(Index Modific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기초자산을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구성주식, 자본구성 기타 다른 사소한 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초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변경을 제외),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i) 본 증권의 발행 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또는 ii) 변경일 전 마지막으로 유효한 지수를 계산하는 공식 및 방법에 따라 지수 변경 전 기초자산을 구성하는 주식(다만, 그러한 주식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경우는 제외함)을 이용하여 산출한 지수를 만기평가가격 또는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수 폐지[(Index Cancellation)]: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할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만기상환금액, 만기일 등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수 폐지 직전에 기초자산 산출기관이 마지막으로 유효한 가격을 계산한 공식 및 방법을 사용하여 그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자산 산출기관 이외의 제3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o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 산출방식과 동일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승계기관이 발표하는 새로운 기초자산이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봅니다.

o 해당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본질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본 증권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수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행인이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이를 조정합니다.

다.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의 추가적인 권리내용 변경사유

1)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및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o 기초자산 발행사의 증자, 감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이 있는 경우 본 증권의 발행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관례에 따라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 후 기준가격은 원미만 절사합니다. 증자전 주식수는 신주 배정 기준일 전전일 주식수이며, 권리부증가는 권리라락이 실시되는 날의 전일증가를 말합니다.

변경사유	조정후 기준가격
유상증자 (구주주에게 청약권리가 배정된 경우에 한함)	조정 전 기준가격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권리부증가) / (1 + 구주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조정전 기준가격/(1+증자전 주식 1주당 신배정 주식수)
무상감자, 액면분할 및 병합시	조정전 기준가격에 해당비율을 감안하여 기준가격을 조정
합병,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계산대리인은 해당사유 발생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한국거래소의 변경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객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초자산의 기준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기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Stock Option행사 등 (구주주에게 신주의 발행과 관련된 권리가 배정되지 않는 경우)으로 인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기준가격을 조정하지 아니함

o 다만, 다음에서 예시한 사항 등과 같이 위에서 정한 기준가격 조정방식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 발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별도의 조정방법을 정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 “ 신배정주식수 ” 가 주주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발행되는 경우 발행인은 소액투자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함. 단, 관련 법규 등에 의하여 발행인이 신주를

청약할 수 있는 비율이 상이한 경우 해당 내역을 반영할 수 있음

- ② 유상증자 의 경우에 신주의 발행가격이 기초자산의 유통가격대비 할인하여 발행되지 않아 기초자산에 대한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청약의 실익이 없는 경우
- ③ 배정되는 신주가 기초자산과는 다른 권리관계를 가지는 경우 (보통주에 대한 우선주 증자 등)
- ④ 기타 기초자산의 변동사유와 관련되어 구주주에게 부여된 권리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기초자산의 투자자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우
- ⑤ 기초자산에 대한 복수의 변동사유가 동일한 일자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일자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각 사유가 발생한 일자 사이에 정규시장에서의 경쟁매매에 의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
- ⑥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한국거래소가 아닌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해당국가의 법규 또는 상관습에 따라 발행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조정 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 경우

2) 거래소의 기초자산 증가 산출· 발표를 다른 기관이 승계하는 경우

발행인은 ① 새로 발표된 기초자산 증가가 종전의 기준종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증가를 기준종가로 정하거나, 혹은 ②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1)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2)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인은 지체없이 발행인의 홈페이지(<http://www.shin>)

young.com) 및 HTS인 eplanup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3) 발행인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가. 발행인이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행인은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영증권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에 게시되어 있는 예탁증권담보유자 연체이자율에 적용하는 최고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영업일 조정][공휴일] 또는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인하여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행인이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본 증권 보유자는 발행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에 따라 그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인이 관련 법령에 의거 파산 또는 회생절차 등 채무재조정 내지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절차에 놓여있는 경우 본 증권 보유자의 권리 행사는 관련 법령 등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4) 준거법과 재판관할

가. 본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본 증권의 발행시 교부된 투자설명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본 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나. 본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Ⅲ. 투자위험요소

정부가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파생결합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금융투자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격변동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공정가액(기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	<p>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초자산의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접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조기상환의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p> <p>공정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별 위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자산가격 수준에 따른 위험 :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가격이 하락할수록 공정가액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초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 하락속도 증가위험 :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에 가까울 수록 기초자산 가격의 변화에 따른 공정가액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공정가액의 상승 또는 하락의 폭이 커지고, 자동조기상환/만기상환 조건에서 멀어질 수록 공정가액의 상승 또는 하락의 폭이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기초자산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 기준일자 대비 기초자산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공정가액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시간경과에 따른 위험: 잔존만기가 길수록 공정가액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p>- 이자율수준에 따른 위험: 이자율이 낮을수록 채권의 가치는 소폭 상승하지만 옵션의 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파생결합사채의 상품구조상 채권과 옵션의 비중에 따라 공정가액이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p>
<p>이해상충구조에 따른 위험</p>	<p>발행인은 본 증권과 관련하여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과 관련된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의 매매, 비거주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거래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며, 그 결과 본 증권의 상환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p> <p>특히, 발행인의 헤지거래에 의해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의 대량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중 만기평가일에는 기초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 관리 및 본 증권의 상환금액 확보를 위하여 발행인은 보유하고 있는 기초자산을 전부 또는 일부 매도할 수 있습니다.</p> <p>* 발행인은 이러한 헤지거래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제정한 헤지거래 운용지침 및 기타 본 증권에 적용될 수 있는 거래소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p>
<p>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미치는 영향</p>	<p>발행인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현재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증권의 인수, 중개 및 매매거래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거래 대상에 본 증권의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발행인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부이지만, 그러한 영업활동의 결과로 기초자산가격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증권의 가치 또한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대한 매매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기초자산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 등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 및 발행인의 이해관계자의 이러한 정상적인 거래활동이 결과적으로 본 증권의 투자자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또한, 만일 기초자산의 가격이 산출되지 않거나 혹은 존속하지 않게 되거나, 본 증권의 존속기간 동안 기초자산의 성격이 매우 이질적으로 변경되어 본 증권 발행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지거나,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 구성종목의 매매</p>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p>기초자산의 변경, 상장 폐지 등에 따른 투자자 손실발생 위험</p>	<p>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경우에는 발행인은 상환금액 산정방식 및 기준가격평가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관주의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기종결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권리내용에 대한 조정이나 조기종결 등의 권리내용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은 "본문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3. 권리내용의 변경 및 결제 불이행에 관한 사항"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종결의 사유가 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본 증권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p>
<p>투자원금 손실 위험</p>	<p>본 증권과 같은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는 그 구조에 따라 만기상환, 중도상환 또는 조기종결시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기간 동안 증권의 시가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2. 발행회사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p>발행인의 재무, 손익 상황과 관련한 위험</p>	<p>본 증권의 발행인이 속한 산업인 금융투자업은 증권시황 등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성이 매우 민감하게 변동되는 손익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업의 특성상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 역시 매우 큰 변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 업계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국내외 경기마저 불투명한 관계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향후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p> <p>-본 증권은 발행인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무담보 증권이므로 발행인의 재무, 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이 재무상태의 악화로 지급불능 상황에 처할 경우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본 증권과 관련하여 신영증권이 부담하게 되는 채무는 다른 무</p>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p>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순위를 가집니다.</p> <p>발행인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는 "본문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4. 발행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2024년 08월 07일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신영증권 제71기 분기보고서 (2024년04월 01일~2024년06월30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지급 불이행 및 결제지연 위험</p>	<p>본 증권의 지급일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행인은 해당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 은행계정 대기업 원화대출에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단,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따라 증권의 권리내용이 변경되어 지급일 등이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p>

3.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p>조기종결 위험</p>	<p>상기 기초자산과 관련하여 권리내용을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을 만기이전에 조기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권의 조기종결사유 발생시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p>
<p>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위험</p>	<p>발행회사는 투자자가 본 증권의 매수를 요청하였으나 천재지변, 거래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증권의 환금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투자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p> <p>본 증권과 같이 환금성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 하에 만기 전 상황이 가능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일괄 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각 사유에 따른 만기 전 상황이 제한되는 제반 상황 및 만기 전 상황에 따른 상환금액 결정구조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p>
	<p>투자자 요청으로 본 증권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시</p>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중도상환시 원금손실 위험	점에서의 공정가액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도상환가격 산정 관련이해상충 위험	본 증권의 투자자가 중도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도상환가격의 평가는 발행인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행인의 지급액을 발행인이 계산하게 되는 이해상충 위험이 발생하게 되나, 발행인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최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이해상충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4.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일반적인 위험	<p>본 증권은 주식, 채권 등의 일반적인 증권들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하여 수익구조가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일괄신고추가서류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본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을 하였지만, 발행인이 현재 알고 있지 못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증권의 거래 및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본 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지 법률적 혹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는지 다양한 면에서 투자 위험을 고려하여야 하며,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에 기재된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투자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 및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투자결정을 내려야 합니다.</p>
	<p>본 증권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얻게 되는 발행가액 대비 초과소득은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발행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이 될 경우, 개인과 법인 모두 2025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이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만기전 장외에서 매수하여 만기상환 받는 경우에 과세기준 금액은 매입 금액 대비 초과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의 발행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므로 주의</p>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기타 위험	<p>하시기 바랍니다.</p> <p>한편, 투자자가 법인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경우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자동조기상환, 만기상환 및 만기일 이전에 발행인의 상환결정에 따라 중도상환하는 것이 증권의 내용이 되는 경우 그러한 중도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며,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발행인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p> <p>본 증권의 투자자는 본 증권을 매입하고 보유함에 있어 요구되는 자격과 권리능력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모든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친 후 투자하여야 합니다.</p> <p>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본 증권을 매입하거나 보유하는 것이 현행 법령,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및 명령, 투자자의 정관, 투자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등이 제한하는 바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p> <p>※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상 투자원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의 판단으로 투자한 금융투자상품의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귀속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p>

IV.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 기초자산의 개요

(1)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 명칭

기초자산	가격산출기관 명칭
삼성전자 보통주	한국거래소

(2) 기초자산 요약

1) 삼성전자 보통주 : 삼성전자는 1969년 1월 13일에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사업부문별로는 TV를 비롯하여 모니터, 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CE 부문과 스마트폰 등 HHP, 네트워크시스템, 컴퓨터 등을 생산·판매하는 IM 부문, DRAM, NAND Flash, 모바일AP 등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반도체 사업과 TV·모니터·노트북 PC·모바일용 등의 TFT-LCD 및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DP 사업의 DS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7년 중 인수한 Harman 부문에서 Headunits, 인포테인먼트, 텔레메틱스, 스피커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본사를 거점으로 한국 및 해외 9개 총괄 생산 및 판매법인 등 156개의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종속회사로 구성된 Global IT 기업입니다.

2.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1) 기초자산의 가격정보

1) 삼성전자 보통주 : 신영증권 HTS(Home Trading System)인 eplanup의 [8100] 및 홈페이지(<http://www.shinyoung.com>),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http://www.krx.co.kr>)

w.krx.co.kr) 및 각종 신문 등에서 삼성전자 보통주의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2) 기초자산의 발행사/가격산출기관의정보

1) 삼성전자 주식회사 :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홈페이지(<http://www.samsung.com>) 및 한국거래소 자료실 등에서 기초자산의 가격산출기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3. 기초자산의 최근 23년간 가격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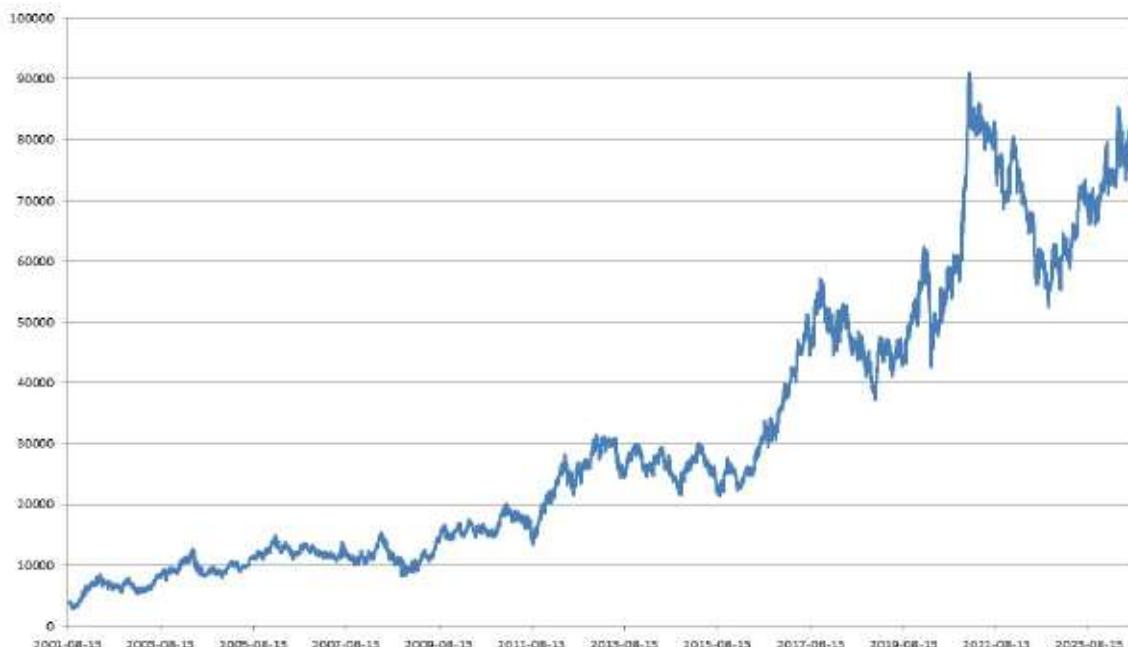
- 대상기간 : 2001년 08월 13일 ~ 2024년 08월 13일

- 기간 중 최고치

삼성전자 보통주 : 91,000.00 (2021년 01월 11일)

- 기간 중 최저치

삼성전자 보통주 : 2,800.00 (2001년 09월 28일)



<삼성전자 보통주추이>

4. 주요 공시사항(최근 6개월)

번호	공시대상회사	보고서명	제출인	접수일자
1	삼성전자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전자	2024.08.06
2	삼성전자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삼성전자	2024.07.31
3	삼성전자	현금·현물배당결정	삼성전자	2024.07.31
4	삼성전자	[기재정정]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삼성전자	2024.07.31
5	삼성전자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삼성전자	2024.07.31
6	삼성전자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전자	2024.07.05
7	삼성전자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삼성전자	2024.07.05
8	삼성전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등관련사항(자율공시)	삼성전자	2024.06.28
9	삼성전자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전자	2024.06.19
10	삼성전자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전자	2024.06.11
11	삼성전자	기업지배구조보고서공시	삼성전자	2024.05.31
12	삼성전자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 변경(안내공시)	삼성전자	2024.05.21
13	삼성전자	분기보고서 (2024.03)	삼성전자	2024.05.16
14	삼성전자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전자	2024.05.10
15	삼성전자	[기재정정]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삼성전자	2024.04.30
16	삼성전자	현금·현물배당결정	삼성전자	2024.04.30
17	삼성전자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공정공시)	삼성전자	2024.04.30
18	삼성전자	[기재정정]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삼성전자	2024.04.16
19	삼성전자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전자	2024.04.12
20	삼성전자	기업설명회(IR) 개최(안내공시)	삼성전자	2024.04.05
21	삼성전자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전자	2024.03.22
22	삼성전자	사외이사의선임·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삼성전자	2024.03.20
23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결과	삼성전자	2024.03.20
24	삼성전자	사업보고서 (2023.12)	삼성전자	2024.03.12
25	삼성전자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삼성전자	2024.03.05
26	삼성전자	주주총회소집공고	삼성전자	2024.02.20
27	삼성전자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삼성전자	2024.02.20
28	삼성전자	주주총회소집결의	삼성전자	2024.02.20
29	삼성전자	감사보고서제출	삼성전자	2024.02.19

5. 기타사항

본 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인 신영증권은 투자자에게 투자기간 중 각 기초자

산가격의 변동에 대하여 어떠한 전망이나 특정수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V. 인수인의 의견

본 증권은 신영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므로 별도의 주관회사를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행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여졌습니다.

VI. 자금의 사용목적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1) 자금조달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모집 또는 매출총액 (1)	20,000,000,000
발행제비용 (2)	1,000,000
순수입금 [(1)-(2)]	19,999,000,000

※ 발행금액을 200억원으로 가정했을 경우의 수치입니다.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약금액 만을 발행하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발행제비용의 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계산근거
발행분담금	1,000,000	발행총액의 0.005%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5조제1항제3호)
합계	1,000,000	

※ 상기금액은 발행예정금액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증권과 관련된 감독분담금, 상장연부과금 등은 현재 산정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였습니다.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본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위험회피(Hedge)거래에 사용됩니다. 이를 위하여 조달된 자금을 본 증권과 유

사한 내용으로 금융기관 등 제3자와의 사이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을 체결하거나, 국공채 또는 우량등급채권의 매입,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과 관련된 선물/옵션 등의 파생상품 등의 매매를 수행하게 됩니다.

VI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세금부과에 관한 사항

본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며, 만일 본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중간에 지급하는 수익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해서는 상환금액과 별도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본 증권이 상환되기 전에 발생하는 중간 지급 수익에 대하여는 본 증권의 상환시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그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이 될 경우, 개인과 법인 모두 2025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이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발행일 이후에 본 증권 또는 본 증권과 관련된 위험회피거래에 대한 세제의 변화로 발행인이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발행인은 이러한 세제의 변화를 당해 증권의 만기지급액 산정에 반영하여 지급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발행회사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1)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 07. 31.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ELS						ELW						DLS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2021년	건	873	259	1,132	62	9	71	0	8	8	0	0	0	6	16	22	0	0	0
	금액	32,968	2,125	35,093	1,576	110	1,686	0	6	6	0	0	0	0	5,381	5,381	0	0	0
2022년	건	709	135	844	6	6	12	0	10	10	0	0	0	6	25	31	0	0	0
	금액	17,540	443	17,983	72	64	136	0	8	8	0	0	0	1	4,801	4,802	0	0	0
2023년	건	818	91	909	33	8	41	0	6	6	0	3	3	9	10	19	0	2	2
	금액	24,646	347	24,993	288	89	377	0	4	4	0	2	2	2	2,241	2,243	0	416	416
2024년	건	126	24	150	68	20	88	0	2	2	0	2	2	5	6	11	3	6	9
	금액	2,134	269	2,403	1,525	264	1,789	0	1	1	0	1	1	0	1,864	1,864	0	1,864	1,864
합계	건	2,526	509	3,035	169	43	212	0	26	26	0	5	5	26	57	83	3	8	11
	금액	77,288	3,184	80,472	3,461	527	3,988	0	19	19	0	3	3	3	14,287	14,290	0	2,280	2,280

주1)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2) 파생결합사채 발행총계 및 발행잔액
(올해 및 과거 3년치, 2024. 07. 31. 현재)

(단위 : 억원)

구분		ELB						DLB					
		발행총계			발행잔액			발행총계			발행잔액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공모	사모	계
2021년	건	6	0	6	0	0	0	6	1	7	0	1	1
	금액	12	0	12	0	0	0	0	355	355	0	355	355
2022년	건	16	1	17	1	0	1	7	1	8	0	0	0
	금액	2,171	20	2,191	14	0	14	163	20	183	0	0	0
2023년	건	45	3	48	7	0	7	9	0	9	1	0	1
	금액	2,967	60	3,027	1,406	0	1,406	197	0	197	100	0	100
2024년	건	70	1	71	61	1	62	35	7	42	26	2	28
	금액	2,822	20	2,842	2,731	20	2,751	615	580	1,195	413	160	573
합계	건	137	5	142	69	1	70	57	9	66	27	3	30
	금액	7,972	100	8,072	4,151	20	4,171	975	955	1,930	513	515	1,028

주1)발행 이전 최소 3개년을 포함한 내역입니다.

(3) 당사의 파생결합증권/파생결합사채 신용환산액
(단위 : 백만원)

구분	ELS	ELB	ELW	DLS	DLB	계
합계	115,020	90,862	753	0	11,441	218,076

(신용환산액이 자본의 5% 이상인 거래상대방 : 신한투자증권 102,146백만원)

주1) 신용환산액이란 거래상대방의 상황이 악화되어 증권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계량화한 수치입니다. 신용환산액 = 대체비용 + (명목원금 × 신용환산율)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며, 신용환산액 산정 대상 위험자산은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ELS),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 ELW), 파생결합증권(기타파생결합증권, DLS), 파생결합사채(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ELB) 및 파생결합사채(기타파생결합사채, DLB)로 하여 신용환산액이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주2) 신용환산율은 거래 종류 및 잔존만기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결정됩니다.

잔존기간	거래종류				
	금리	통화 및 금	주식 (주가지수)	귀금속 (금제외)	기타 일반상품
1년이하	0.0%	1.0%	6.0%	7.0%	10.0%
1년초과 5년이하	0.5%	5.0%	8.0%	7.0%	12.0%
5년초과	1.5%	7.5%	10.0%	8.0%	15.0%

예시) KOSPI200과 연계된 2년만기 파생결합증권(ELS)를 발행하고, 이를 헤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ELS계약(최초 100억원 지급)을 체결한 경우 신용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됨

$$\begin{aligned} \text{신용환산액} &= \text{대체비용} + (\text{명목금액} \times \text{신용환산율}) \\ &= 100\text{억원에 대한 시가평가금액} + (100\text{억원} \times 8\%) = 108\text{억원} \end{aligned}$$

3. 증권의 청약 및 발행의 취소에 관한 사항

본 일괄신고추가서류의 효력발생일 이후부터 발행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 시장상황의 변동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청약 및 발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청약증거금으로 납입된 금액은 취소사유 발생 익영업일까지 투자자의 청약계좌로 반환되며,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발행인에 관한 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 사업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사업연도 제 70기중(2023년 04월 01일~ 2024년 03월 31일)
2024년 06월 12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II. 반기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사업연도 제 70기중(2023년 04월 01일 ~ 2023년 09월 30일)
2023년 11월 06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Ⅲ. 분기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사업연도 제 71기중(2024년 04월 01일~ 2024년 06월 30일)
2024년 08월 07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Ⅳ. 일괄신고서

2024년 02월 05일 금융위원회에 제출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 해당사항 없음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 해당사항 없음